

‘중재연구’ 30년간의 연구동향 분석

- 한국중재학회 창립30주년에 즈음한 학술연구 동향분석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30 Years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성준호*
Joon-Ho Sung

〈목 차〉

- I. 서설
- II. 중재의 정의와 범위
- III. 연구현황 및 연구내용 분석
- I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절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재연구’ 연구동향분석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중재인, 법학박사

I. 서 설

사적경제활동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경제활동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익의 추구는 상호간의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분쟁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다. 민사 및 상사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절차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해결도 가능하다. 그중 중재절차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결되는 조정절차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제3자인 중재인의 관정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그 본질에 있어 재판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국내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날로 증가해오면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절차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국제적 무역 분쟁에 있어 중재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0년 12월 한국중재학회가 발족하였으며, 2021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재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어오고 있으며, 당 학회는 중재분야의 유일한 전문연구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내 유일한 학회인 한국중재학회의 경우 학회 회원은 주로 무역·통상 전공 학자들과 법학전공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재제도의 특징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통상과 관련된 분쟁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연구를 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중재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법제도로서의 연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중재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중재연구’는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을 비롯한 ADR분야의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재연구’가 창간 이래로 발표해온 중재 및 조정과 ADR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 한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차원에서 한국중재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중재학회의 학술지인 중재연구에 게재된 중재 및 ADR 관련 논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중재의 다양한 관점들 가운데서 어떠한 세부주제들이 주로 연구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중재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적 차원에서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내용적 차원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부족한지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중재연구’의 연구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중재의 정의와 범위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그 본질은 그것이 사적재판이라는데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¹⁾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자치적 의사를 존중하고, 소송절차 외에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률관계를 승인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²⁾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는 중재판정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중재합의이다.³⁾

이에 더하여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당사자간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이는 분쟁에 대한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른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고 사인간의 계약에 기초한 사적분쟁해결이나, 자신의 다툼을 스스로 해소할 권한을 가지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기초로 제3자인 중재인에게 다툼의 해결을 맡긴다는 당사자의 자치적 분쟁해결 권한의 한 표현이며, 그러한 판정절차에 관여하여 자신의 공격방어를 다한 이상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내용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⁵⁾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2판], 박영사, 2018, 23면.

2) 성준호, “중재판정의 효력”,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8, 118면.

3) 손용근,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2014(제577호), 192면.

4)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소개되고 있는데, (1) 중재인의 권한은 중재계약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재절차를 허용하는 법률에서 유래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재인이 선임되지만 당사자의 의사는 중재인선정의 수단에 불과하며 중재권한의 연원이 아니므로 중재인은 고유한 의미의 법관이고 따라서 중재판정의 성질은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판결설(이호원, “중재판정 승인의 개념, 효력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3면)과 (2) 중재계약은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판정에 승복하고 다툼을 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다툼을 그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실체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인의 중재판정권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 중재계약에 표시된 당사자 의사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정할 자유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중재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실현에 협력하는 의미를 가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계약설이 그것이다.(김홍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상사중재연구총서 VII, 대한상사중재원, 1975, 29면 이하 참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5조는 이러한 학설에 비추어 판결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근본적으로 사인의 재판행위이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절차권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중재판정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중재판정이 그 국가의 법질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협력하면서도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그 실현에 조력한다.⁶⁾

다만 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한 공권적인 판단인 판결과 달리 사인 사이의 합의에 의기해 중립적인 제3자가 내린 판단이므로 그 효력과 다음 두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로부터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나, 중재판정의 효력은 직권으로는 참작되지 않는다.⁷⁾ 둘째, 당사자가 집행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해소하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⁸⁾

국가재판제도와는 별개의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는 크게 보면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⁹⁾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재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ADR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ADR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다만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소송적 해결방안과 달리 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와 연관되는 성격도 존재한다.¹⁰⁾

사인 간에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제를 원하는 당사자는 국가의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송제도는 그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리절차를 거치게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만큼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5)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靑林書院, 2014, 30-31頁.
 6) 曷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297면.
 7) 서세원,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면, 양병희/박영길/서정일/손용근/이강민/이호원/장문철/정선주/조대연, 「주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5, 180면.
 8) 이호원, “중재판정 승인의 개념, 효력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8면.
 9) 현재 다양한 ADR 유형이 발전함에 따라서, ADR 학계에서는 ADR을 소송에 의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고 하지 않고, 적절한 분쟁해결방안(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 정의함으로써 ADR의 독립성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10)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할 재산이 소재해 있는 외국에 가서 집행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자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외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중재법 제3조 제1호) 따라서 중재절차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비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중재합의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판사 등 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닌 사적인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처럼 중재는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그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며, 따라서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필수적이다.¹¹⁾

이러한 중재절차는 소송절차가 가지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내려진 판결의 자발적 집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직과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재절차는 사적자치에 의한 절차의 유연성, 단심제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 및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특히 국제적 무역관계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분쟁이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경우, 어느 나라 법정에서 재판 받을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법정에 적용되는 절차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대상 국가에서 당해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분쟁 당사자는 어느 일방국가의 법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제3의 장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중재절차라 할 수 있다.

Ⅲ. 연구현황 및 연구내용 분석

1. 개관

본 장에서의 분석은 한국중재학회의 학회지인 중재연구가 창간된 1991년 이후부터 2020년 30권 제2호까지 30년간 중재연구에 게재된 총 606편의 논문 중 중재 및 조정 기타 ADR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06편 중 중재를 비롯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무역·통상 및 기타 논문을 제외하고 543편의 논문을 대상으

11)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2면.

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쟁, 갈등, 클레임 관련 사전적 예방 등에 관한 논문 분쟁해결이 아닌 예방에 해당되는 연구논문 등은 분석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중재연구는 중재제도에 대한 전문학술지로 주된 연구 분야는 중재절차 및 중재법이며, 그 이외에도 조정 및 기타 대체적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제도적 법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제 중재관련 현안 및 기타 실무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논문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범위는 분쟁해결과 관련된 중재, 조정 및 기타 대체적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분석논문이다. 또한 분석 방식으로는 연구 대상지역에 대한 분류 및 연구 방법론적 분석을 겸하였다.

2. 연구현황 분석

중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현황에 대한 분석은 국제중재와 관련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해당지역의 연구 빈도와 내용을 분석하는 지역별 분석 그리고 중재제도의 분석 및 연구의 측면을 법학적, 제도적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해당 분류별 연구 빈도와 내용을 분류한 방법론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이 하에서는 논문 및 주제의 연구내용에 대해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한다.

(1) 지역별 분석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간 중재연구에 게재된 총606편의 중재 및 조정 기타 ADR관련 논문중 지역적 연구논문 156편을 연구 대상지역별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국제 중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각국의 중재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지역에서의 중재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해당 국가와의 통상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역국의 분쟁해결법제 및 중재기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나 중재기관 및 중재법 및 중재법과 제도일반에 대한 연구 이외에 특정지역 및 국가의 중재제도나 중재기관 및 중재법에 관한 연구가 총 156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대륙별 분류로 아시아지역이 102편으로 전체 156편의 논문 중 65.4%, 북미대륙은 36편 23.1%, 유럽 대륙은 17편 11.5%에 달하며, 남미대륙에 관한 연구는 1편으로 0.6%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서 총 62편의 논문이 중국의 중재기관이나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도에 관한 연구가 32편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의 제도에 관한 연구가 16편, 북한의 제도에 관한 연구가 5편, 유럽지역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에 관한 연구는 17편¹²⁾ 그밖에 몽골 3편,

인도네시아 3편, 베트남 2편, 미얀마 1편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중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 관한 제도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교역증가 및 밀접성의 증가에 비해 그들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라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중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가 각각 한편씩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간 연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중재연구 연구 국가 및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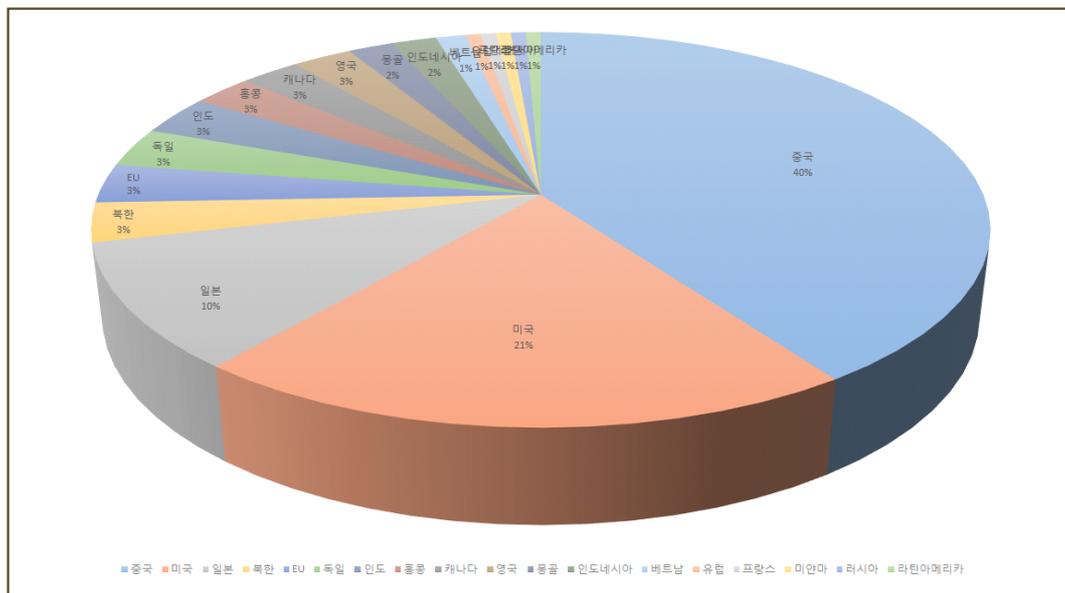
대상지역 및 국가		빈도	구성비(%)
아시아대륙	중국	63	40.4%
	일본	16	10.3%
	인도	5	3.2%
	홍콩	4	2.6%
	인도네시아	3	1.9%
	베트남	2	1.3%
	몽골	3	1.9%
	미얀마	1	0.6%
	북한	5	3.2%
북미대륙	미국	32	20.5%
	캐나다	4	2.6%
남미대륙	라틴아메리카	1	0.6%
유럽대륙	EU	7	4.5%
	독일	5	3.2%
	영국	4	2.6%
	러시아	1	0.6%
전체		156	100%

또한 해외지역의 연구에 있어서 주요국가의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도 특정 기관 및 제도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가령 중국의 경우도 상

12) 영국의 경우는 브렉시트(Brexit) 법안에 따른 유럽연합의 탈퇴가 2020년1월31일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유럽연합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럽지역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포괄하는 유럽지역에 포함시켰다.

당수의 연구가 중국의 CIETAC과 관련된 논문이 9편의 논문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수의 중재기관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그리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령, 미국의 미국중재협회(AAA) 1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1편, ICC중재법원이나 7편, HKIAC 1편 그리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관한 논문은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그림 1> 중재연구 연구 국가 및 지역별 분포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재법이 개정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중국의 각 성(省)이 관할하는 지방중재위원회도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¹³⁾ 따라서 다수의 지방중재위원회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지방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중재위원회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¹⁴⁾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일찍 ADR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해온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각 주들은 별도의 중재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미국기업과 교역을 활성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각주의 중재법 동향과 다양 쟁점별 분석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⁵⁾

13) 정용균/이승석, “중재기관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 20권 제2호, 2010년 8월, 199-225면 참조.
 14) 정용균, “국제상사중재 및 ADR제도: 현재와 미래”, 『무역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무역 학회지』 1975~2013년 메타분석』(한국무역학회 40주년 기념논문집), 2014, 7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동, 유럽 및 중남미지역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편향적인 무역환경에서 거래선의 다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무역환경에서 일부 국가에만 편중되었던 연구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2) 방법론적 분석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되어 왔으며, 중재절차와 관련하여도 연구동향 및 그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분석 및 실증분석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크게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각 방법론이 어떤 정도로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학문의 영역은 각 분야별로 자신만의 연구방법론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궁극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각 학문이 가지는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 및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라는 분야는 여타의 단일학문에 비해 이론적·실무적 연구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분야이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중재에 관한 연구방법론은 법학 및 무역·통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거나 민사소송법체계의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1767호)을 제정·공포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적으로 중재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이 있다. 그밖에 독일을 비롯하여 민사소송법체계의 일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중재절차는 사적분쟁에 대한 사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에 대한 범규범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재절차에 관한 법학적 분석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재연구에 게재되고 있는 논문들에 대한 법학적 분석비율은 적절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제중재분야에서 중재절차에 적용할 절차법적 표준에 관해서는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재법을 선도해오고 있다. 그 만큼 중재분야는 법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학적인 분석이 중재연구에 중요하다고 하겠다.¹⁷⁾

15) 정용균, 전계“국제상사중재 및 ADR제도: 현재와 미래”, 8면.

16) 정용균, “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학문 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2호, 2011년 6월, pp.151-176.

17) 정용균, 전계“국제상사중재 및 ADR제도: 현재와 미래”, 9면.

뿐만 아니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543편의 논문 중 56%에 해당되는 299편의 논문이 중재제도에 관한 일반 이론 및 제도분석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재분야는 실제로 중재를 실행하는 중재기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 ICC중재법원이나, 미국의 미국중재협회(AAA),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국의 CIET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 각국은 우수한 국제중재기관을 통하여 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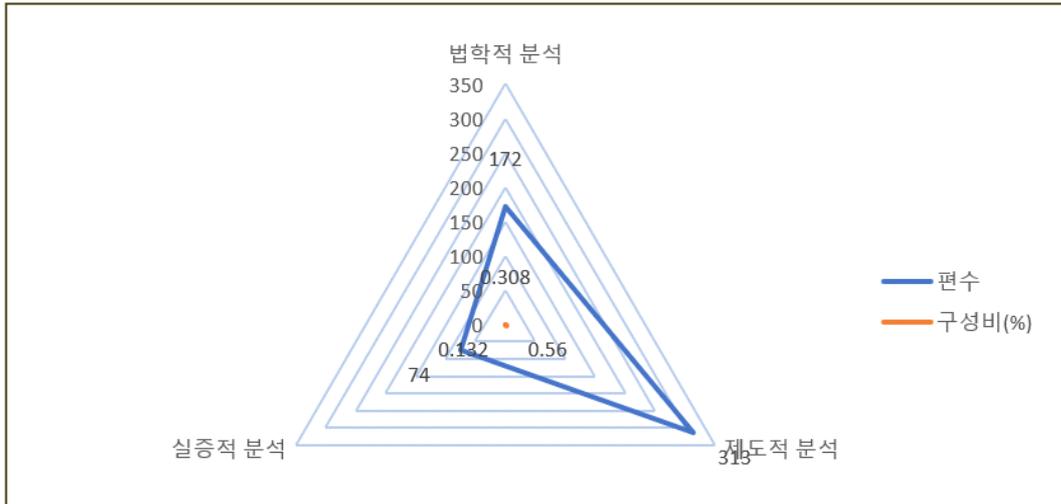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도 있으나 상당수 상사중재는 중재기관을 통해서 중재가 시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임의중재가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분쟁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재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중재기관이 분쟁당사자나 중재인들에게 통지나 송달등을 행하고 중재인선임 등 절차에 관한 중재규칙을 각자 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당사자들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재기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중재기관의 연구는 제도적 연구방법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에 대한 방법론적 분포 현황

	편수	구성비(%)
법학적 분석	178	30.8%
제도적 분석	299	56.0%
실증적 분석	66	13.2%
합 계	543	100%

위의 [표2]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 기간 동안 중재학회지에 게재된 총 543편의 논문 중 중재 및 ADR관련 논문 중에서 법학적 연구논문은 총 178편으로 전체논문 중 30.8%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는 독자적인 중재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제정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중재기관들은 중재센터라는 이름보다도 중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만큼 법학적 측면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분석방법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중재절차는 중재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실제 국제 및 국내중재사건에서 중재인은 통상의 소송사건에서의 법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 및 국내 중재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 또는 준거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당 법역의 법률전문가에 의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해당 법역의 법률에 관한 중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에 대한 방법론적 분포 현황



한편 제도적 분석방법론을 채택하여 분석한 논문은 총 299편으로 전체논문의 56% 이르고 있다. 제도적 방법론은 중재분야에 있어서 유효한 분석방법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재는 중재기관마다 독특한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성 및 제도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각국의 중재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중재 및 조정과 ADR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채택한 논문의 수도 66편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연구내용 분석

그동안 중재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 중재 및 ADR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의 분야를 세분하여 보면 총 12개 분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무역·통상 분쟁 해결, 중재제도, 중재기관, 중재법일반, 중재합의, 중재인선정, 중재절차, 중재판정, 보전조치, 투자중재, 조정, ADR 일반으로 세분될 수 있다 하겠다.¹⁸⁾ 그동안 중재연구에 게재된 606여편의 논문 중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분야의 논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총 543편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분야의 논문에 해당되는 논문의 주제별 연구추이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8) 이러한 분류는 반드시 중재분야에서 공통된 분류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다만 현재의 43편의 논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적용한 자의적 기준이다. 중재법 일반이라는 기준과 중재법의 세부분야간의 분리는 명확하지 않다.

(1) 주제별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의 연구내용별 현황

연구논문 중 124편이 중재절차 및 제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 졌으며, 172편이 중재법 및 중재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이루고 있으며, ADR 및 ODR을 비롯한 기타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가 132편(이상 428편) 그리고 기타 분쟁해결 관련 연구가 131편이다. 이러한 중재 관련 논문의 중심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석해본다.

〈표 3〉 주제별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의 연구내용별 분포 현황

분야		논문편수	구성비
중재제도	중재제도 일반	92	17%
	중재기관	8	1%
중재법	중재법일반	70	13%
	중재합의	41	8%
	중재인선정	30	6%
	중재절차	7	1%
	중재판정	56	10%
	보전조치	11	2%
ADR	조정	25	5%
	ADR 및 ODR	96	17%
분야별 분쟁해결방법	무역 및 통상분쟁 해결	18	3%
	남북관계에서의 분쟁해결	21	4%
	소비자분쟁에 있어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18	3%
	투자중재	29	5%
기타	기타	59	4%
합계		총543편(570주제)*	1.00%

* 단일 논문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또는 수개의 쟁점 간 비교·분석을 다룬 논문이 다수 있음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의 연구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43편의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논문 중 중분류로 중재제도와 관련된 논문은 100편으로 18%에 해당되며, 이를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에 관한 논문으로 세분류하면 ‘중재제도’에 관한 논문이 92편으로 17%이며, ‘중재기관’에 관한 논문이 8편으로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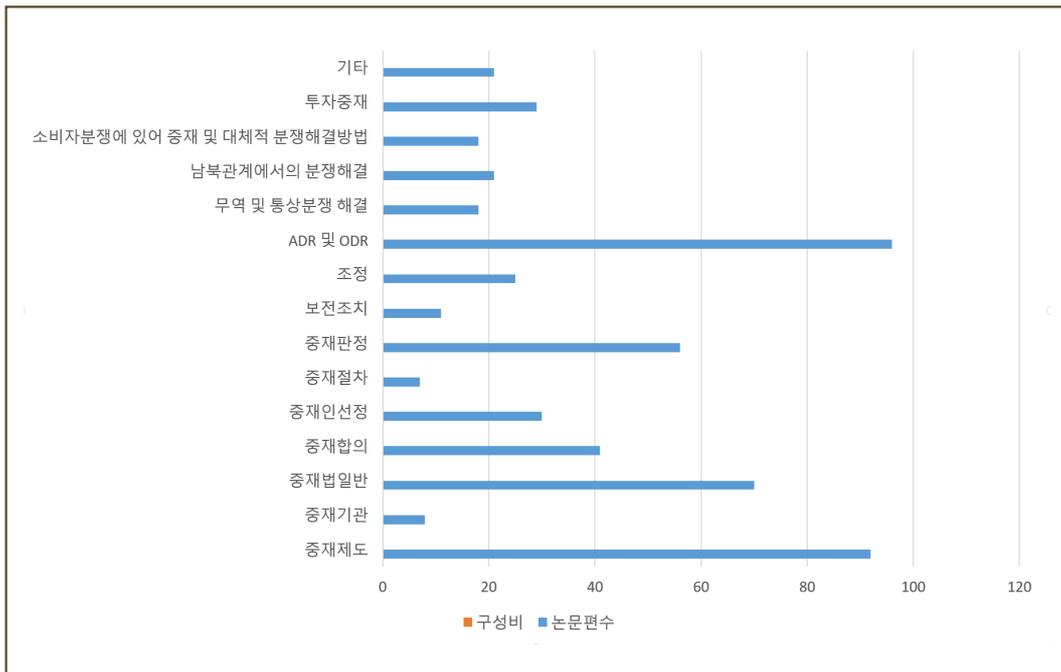
전체 543편의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논문 중 중분류로 중재법과 관련된 논문은 중재법과 관련된 논문은 총215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40%의 비율로 상당히 많은 논문이

중재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중재법일반, 중재합의, 중재인선정,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보전조치로 세분류하면, ‘중재법일반’에 관한 논문이 70편으로 13%이며, ‘중재합의’에 관한 논문이 41편으로 8%이며, ‘중재인선정’에 관한 논문이 30편으로 6.0%이며, ‘중재절차’에 관한 논문이 7편으로 1%이며, ‘중재판정’에 관한 논문이 56편으로 10%이며, ‘보전조치’에 관한 논문이 11편으로 1.8%이다. 이상의 분류기준인 주제가 두개 이상 포함된 복합적으로 연구된 논문이 27편이다.

전체 543편의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논문 중 중분류로 중재 이외에 조정 및 알선을 포함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에 해당되는 논문을 ‘ADR’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관한 논문이 121편으로 22%이다. 이를 세분류하면 그중 조정에 분류되는 논문은 25편으로 5%이며, ‘ADR 및 ODR’에 관한 논문이 96편으로 17%이다.

전체 543편의 중재 및 조정 또는 ADR 논문 중 중분류로 ‘분야별 분쟁해결방법’에 해당되는 연구논문은 107편으로 19%에 이른다. 이를 세분류하면, ‘무역 및 통상 분쟁해결’에 관한 논문이 18편으로 3%, ‘남북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논문이 21편으로 4%이며, ‘소비자분쟁에 있어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논문이 18편으로 3%이며, ‘투자중재’에 관한 논문이 29편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류방법 이외의 분쟁해결 관련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속하는 논문은 21편으로 4%에 해당된다.

〈그림 3〉 주제별 중재 및 조정 또는 ADR논문의 연구내용별 분포 현황



(2) 동태적 연구

이러한 연구논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재법 일반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거나, 해외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및 국제모델법규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재법에 대한 분석에 관한 연구는 법률의 개정을 전후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 각국의 중재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비추어 주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의 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국등과 같이 교역량과 국가의 지명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중국 및 미국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여타 국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법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 중재결과의 보전 조치 및 집행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별 세분화된 연구보다 중재법의 일반적인 쟁점에 대한 연구가 보다 넓게 이루어져 왔다. 물론 중재법의 전반에 걸친 연구는 각 법역의 중재관련 법률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재법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1990년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재학회가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루어 왔던 중재 및 조정과 ADR에 관한 연구논문들에 대하여 정리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재연구는 606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대한 연구주제를 통해 중재 및 조정과 ADR 분야에 대한 귀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중재연구의 그동안 학문적 성과와 연구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재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의 단연 독보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적인 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성장과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주요국의 변천에 따른 흐름의 영향을 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중재제도 및 중재법제의 소개와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제별 연구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중재법제에 대한 주요 쟁점별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법론적 연구분석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법학적인 접근방법중 특히 주요 쟁점별 연구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분석은 606편을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해당 주제에 해당 주제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분석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중재학회의 연구 성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 2013.
- 김선정, “2011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 2013.
- 김진현/정용균, “미국의 사법형 ADR제도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 2011.
- 김홍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상사중재연구총서 VII, 대한상사중재원, 1975.
-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3판], 삼영사, 2014.
- 김희준,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사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 박범철/주이화/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비교연구: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 중재학회, 2013.
- 서세원,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석광현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2017.
- 석광현, “2016년 중재법에 따른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 취소와 승인·집행에 관한 법리의 변화, 한양법학 제34권 제1호, 2017.
- 성준호, “중재판정의 효력”,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8.
- 손수일, “미국법원에서의 ADR 발전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Early Neutral Evaluation”, 「재판자료」, 법원도서관, 제73집, 1996.
- 손용근,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제53권 10호, 2004.
- 양병희/박영길/서정일/손용근/이강빈/이호원/장문철/정선주/조대연, 「주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5.
- 오석웅,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지의 의미”,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도입방안”,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3권, 제1호, 2009.
-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6.
- 윤진기, “2016년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별소의 심급 제한”,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7.
- 이상윤, 「영미법」, 개정판, 박영사, 200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2판], 박영사, 2018.
- 이정원,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 이호원, “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 이호원, “중재판정 승인의 개념, 효력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이호원, “중재판정의 취소”, 법조 575호, 법조협회, 2004.
-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
-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 장준호/임수민, 「세계중재법규」[제1권], 법무부, 2014.
-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 정선주, “소송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 제2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8
- 정선주, “중재판정의 효력”, 민사소송 제9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 정용균,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쟁과 온라인 ADR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2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정용균, “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학문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2호, 2011.
- 정용균/이승석, “중재기관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
-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제16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제17128호】 ,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Geimer in: Zöller, Zivilprozessordnung, 32. Aufl. 2018, § 1055 ZPO.

Ingo Saenger, Zivilprozessordnung Handkommentar, 2.Auflage, Nomos, 2007.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30 Years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Joon-Ho Sung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s other than court proceedings. Among them,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system tha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in which the dispute is terminat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result of the final judgment by the decision of a third-party arbitrator, and its essence is a judgment.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as founded in December 1990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conduct specialized research on them, with professional research on ‘arbitration procedures’ continuing until today. Thus,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s positioned as the only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In the case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hich is the only society in Korea related to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members are mainly scholars majoring in trade and commerce and ones majoring in law. This situation reflect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system because it is a matter of dispute procedures related to trade and commerce and many scholars who research trade and commerce need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at substitutes for litigation because it has research value as a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published by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plays a role in mediation, as well as mediation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papers in the ADR fiel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mediation and ADR-relat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an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n four dimensions,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which sub-themes are mainly studied among the various viewpoints of mediation through thematic analysis. Second, it looked at what methodology was used to study intervention at the methodological level. Third, it assessed what countries and regions had been mainly studied at the regional level. Fourth, in terms of content, what kind of research had been mainly conducted and what kind of research was relatively insufficient was investigated,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last 30 years and presenting a milestone for the research direction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in the future.

Key Words :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arbitration procedu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search Trend Analysis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